■ (해양경찰청) 범죄수사규칙 [별지 제191호서식]

잠정조치 고지서

[]결정 []취소 []연장 []종류변경

1. 스토킹행위자

성 명: 000 (00세, 성별)

주 거:

2. 잠정조치 통보일시·장소, 방법 및 불복방법 고지

일시·장소: ,

방 법: *0000 (예시 : 대상자 대면하여 통보, 전화상 통보 등)*

< 고지내용 > 아래 내용 · 기간과 같이 *0000. 00. 00.* 에서 행위자에 대해 잠정조치가 결정되었음. ***(4호 집행 시 추가)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,*** 이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스토킹처벌법 제12조에 따라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음. 항고할 때는 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함.

3. 잠정조치 결정내용 ([]결정 []취소 []연장 []종류 변경)

[] 1호.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

[] 2호. 피해자, 그의 동거인,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

[] 3호. 피해자, 그의 동거인, 가족에 대한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

[] 3의2호. 「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

[] 4호.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

4. 잠정조치 기간:

5. 담 당 자 ※ 담당자는 불송치결정이 있을 경우 잠정조치가 실효됨을 안내 · 설명

소 속 :

성 명 :